

1. 개정이유

대학 운영 시 4대 요건 완화 등 대학 자율성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이 시행('23. 9. 19.)됨에 따라, 후속조치로서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상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 위치변경인가 요건 완화(안 제7조)

현행 규정은 대학 위치변경인가 요건으로 교사와 교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개정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경우 교지요건은 평가하지 않게 됨에 따라, 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요건 중 교지요건을 삭제함.

나.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 신설(안 제8조)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현행 시행규칙은 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학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 환산방법에 대해 규정함.

다. 교사 임대가능 요건 신설(안 제14조 신설)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2항제2호 신설에 따라 대학은 교사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사를 임대할 수 있음. 이에 교사 임대 시 학교에 설치할 수 있

는 시설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로 규정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대학설립심사위원회”를 “대학설립·개편심사위원회”로 한다.

제7조 전단 중 “제5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교사와 교지”를 “교사”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을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으로, “(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를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을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으로, “(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를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4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2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2항) 제1호 중 “운영수익총액”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2항 본문에 따른”을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으로,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수익총액”을 “운영수익총액,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으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을 말한다”를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에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과목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과목에 따른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교사의 임대)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
의 규정에 의한 <u>대학설립심사위원회</u> 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	----- <u>대학설립 · 개편</u>	----- <u>대학설립 · 개편</u>	----- <u>대학설립 · 개편</u>	----- <u>대학설립 · 개편</u>
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u>심사위원회</u> -----	<u>심사위원회</u> -----	<u>심사위원회</u> -----	<u>심사위원회</u> -----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	-----	-----	-----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	-----	-----	-----
제출하여야 한다.	-----.	-----.	-----.	-----.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 · 경영하는 자는	-----	-----	-----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	-----	-----	-----	-----
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	-----	-----	-----	-----
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	-----	-----	-----	-----
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u>제5조</u>	----- <u>제9조제</u>	----- <u>제9조제</u>	----- <u>제9조제</u>	----- <u>제9조제</u>
<u>에 따른 교사와 교지</u> 를 갖추어	<u>3항에 따른 교사</u> -----	<u>3항에 따른 교사</u> -----	<u>3항에 따른 교사</u> -----	<u>3항에 따른 교사</u> -----
야 한다. 이 경우 <u>교사와 교지</u> 를	-----, ----- <u>교사</u> -----	-----, ----- <u>교사</u> -----	-----, ----- <u>교사</u> -----	-----, ----- <u>교사</u> -----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	-----	-----	-----	-----
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	-----	-----	-----	-----
여야 한다.	-----.	-----.	-----.	-----.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
법) ①영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법) ①-----	법) ①-----	법) ①-----	법) ①-----
의하여 1천명(<u>대학원 대학 및</u>	-----(<u>대학원대학 및 장</u>	-----(<u>대학원대학 및 장</u>	-----(<u>대학원대학 및 장</u>	-----(<u>대학원대학 및 장</u>
<u>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u>	<u>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u>	<u>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u>	<u>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u>	<u>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u>
<u>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u>	<u>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u> ----	<u>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u> ----	<u>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u> ----	<u>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u> ----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	-----	-----	-----	-----

원(이하 “총정원”이라 한다)을
1천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
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
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2. (생 략)

②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
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총정
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
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
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
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신 설>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
에는 200명)으로 -----

----- 각 호---
---.

1. 2. (현행과 같음)

②-----
----- (대학원대학 및 장애인
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
----- (대학원대학 및 장애
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

----- 각
호-----.

1. 2. (현행과 같음)

③ 영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
하여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
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
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인 총
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
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
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4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text{계열별 환산정원} = (200\text{명} - \text{총정원}) \times \frac{\text{계열별 학생정원}}{\text{총정원}} + \text{계열별 학생정원}$$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생 략)

<신 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과목 중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과목에 따른다.

③ -----
----- 운영수익총액,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한다. ---

----- 경우에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

한다.

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 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 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

<신 설>

---.

1. -----

-----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2. -----

-----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한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

제14조(교사의 임대) 영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로 한다.